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 개정 안내

수출입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세운송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가 개정되어 2012.2.1부터 시행됩니다.

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, 또한 변경된 신고서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개정내용

구 분	내 용
보세운송기간	○ 해상화물 : 15일 → 10일 ○ 항공화물 : 7일 → 5일 ※ 운송기간 초과시 오류 통보 예정
일반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요건	○ 종합인증우수업체(AEO)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(요건 신설) – 기존 지정업체가 갱신신청할 경우 2013.1.1부터 적용
귀금속 등 고가물품 운송	○ 종합인증우수업체(AEO) 또는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요건 충족시 운송 가능(신설) – (요건)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유개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하며, 내국물품과 혼적 불가
검사대상물품 도착보고	○ 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의 운송인 도착보고(신설) –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물품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전자봉인(e-Seal) 이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도착보고 – 전산신고가 가능토록 신고 전산시스템 보완 필요 ※ 도착보고 누락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
업무정지	○ 업무정지 부과 시점 : 처벌시점 → 위반시점
보세운송서식 개정	○ 차량번호, 세관봉인번호(검사대상물품의 경우)를 반출전에 기재토록 신고서식 개정 ※ 전산시스템 또는 인쇄 용지 개선 필요
시행일자	○ 2012.2.1일부터 시행

※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)의 뉴스/소식>새소식>공지사항 참조